제344회 정례회 2015.12.16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수 석전문위원

####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- 1. 제 출 자 : 최병윤 의원 등 7명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### 3. 제안이유

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「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제 규정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 관련 심의·자문을 위한 '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'설치 (안 제5조)
  - 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」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
- 다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라. 지원센터 학습자가 충청북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시 「초·중등교육 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 보장을 규정함 (안 제8조)

마.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, 경찰서, 사회단체. 청소년지원기관. 지자체 등과 연계·협력토록 규정함. (안 제11조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「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」를 「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로 변경하고 용어 및 내용을 법률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주요 개정내용은,
  - 1) 안 제5조에서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'를 설치하되, 이를 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설치·운영 조례」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여, 유사 위원회 중복설치를 예방하였음.
  - 2) 안 제6조, 제7조에서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 조에 따라 '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'를 설치하되, 이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음.
  - 3)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「초· 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였음.
-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, 교육, 자립에 필요한 지원 조 항들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 다고 사료됨.

## □ 참고자료.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

○ 최근 5년간 변동추이 : 1,455명('10) → 1,578명('11) → 1,605명('12) → 1,486('13) **→ 1,382('14)** 

(단위 : 명)

구 분	중학교 (여자)	고등학교(여자)					- n., n.
		일반	특성화	특수 목적	자율고	계	총계(여자)
총계	362(164)	549(227)	356(151)	56(23)	59(24)	1,020 (425)	1,382(589)
학년별							
1 학년	115(51)	367(143)	206(88)	27(14)	36(14)	636(259)	<u>751(310)</u>
2 학년	148(68)	149(71)	112(46)	18(2)	20(10)	299(129)	447(197)
3 학년	99(45)	33(13)	38(17)	11(7)	3(-)	85(37)	<u>184(82)</u>
행정구역별							
청주시	201(91)	216(99)	108(40)	33(17)	16(-)	373(156)	574(247)
충주시	42(20)	81(26)	19(8)	-	15(10)	115(44)	<u>157(64)</u>
제천시	20(7)	35(17)	60(22)	-	-	95(39)	115(46)
청원군	25(7)	116(40)	18(11)	13(-)	17(10)	164(61)	189(68)
보은군	3(2)	5(-)	24(12)	-	-	29(12)	32(14)
옥천군	11(3)	9(6)	12(6)	-	-	21(12)	<u>32(15)</u>
영동군	9(6)	7(2)	16(4)	-	-	23(6)	<u>32(12)</u>
증평군	6(5)	15(7)	87(40)	-	-	102(47)	<u>108(52)</u>
진천군	19(12)	30(19)	6(3)	5(4)	-	41(26)	60(38)
괴산군	4(3)	7(4)	-	-	-	7(4)	<u>11(7)</u>
음성군	20(8)	28(7)	-	5(2)	-	33(9)	53(17)
단양군	2(-)	-	6(5)	-	11(4)	17(9)	<u>19(9)</u>

<sup>※ 2014</sup>년 충북교육통계